

수원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19나7595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19나75952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9가단346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1. C

2. D

3. E

4. F

5. G

6. H

7. I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문

변론 종결2020. 4. 23.

판결 선고2020. 5. 14.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9가단346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C는 20,841,999원,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I, 피고 G, 피고 H는 각 13,894,666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제2쪽 맨 마지막 부분에 '마.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원고 소속의 담당 직원이 이 사건 토지를 직접 현장 확인한 바 있다'는 부분을 추가하고, 아울러 그 아래 증거에 '당심 증인 K의 증언'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이와 같은 결론은 1심에서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당심 증인 K의 증언을 보태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양경승

판사박상준

판사인형준